

企圖特輯解說

◎ 目 次 ◎

- I. 總 論
 - 1. 日本 工業所有權行政을 둘러싼 當面課題
 - 2. 日本 工業所有權行政의 官民合同 抜本的 改革方案
- II. 各 論
 - 1. 直面한 課題
 - 2. 講究對策
- III. 參 考
 - 1. 日本 工業所有權 實務節次的 흐름圖
 - 2. 特許出願에서 登錄까지의 節次 (美·日 比較)
 - 3. 美國上院에서의 日本特許制度 改善을 要求하는 付帶決議 16項 目(1988. 7. 27)
 - 4. 64(1989)年度 日本特許 特別會 計豫算(案)
〈고딕은 이번號, 명조는 지난號〉

本 報告書는 日本特許廳 및 關聯機關으로부터 入手한 資料를 綜合·分析·整理한 것이며 便宜 上 年度를 昭和로 表示했음. 〈筆者 註〉

〈前號에서 계속〉

2. 講究對策

(1) 綜合的 改革對策

前述한 바와같은 狀況속에서 特許行政의 使命인 知的 生産活動의 成果(產物)에 對한 迅速, 正確한 權利付 與를 實現함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對策을 綜合的으로 또 體系的으로 推進하여 特許行政의 抜本的 改革을 期 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日本 工業所有 課題

(2) 審査官의 增員

審査의 核心을 이루는 判斷業務의 能力擴充을 위하여 審査官을 中心으로한 大幅의 增員은 最大重點事項으로서 64年度에는 46人(其中審査官 30人)의 增員實現을 要求中에 있음.

歐美의 特許廳은 계속 增員計劃을 推進하고 있는바 全世界의으로 볼때도 負擔을 크게 가지고 있는 日本의 審査官增員은 무엇보다도 緊要한 課題라 하겠다.

美·日의 年間出願件數, 審査官數, 1人當 處理件數 比較 (62年度)

國別	區分	出願件數	審査官數	1人當處理件數
美 國		125,677件	1,493人	83件
日 本		538,410〃	856〃	250〃

(3) Paperless 計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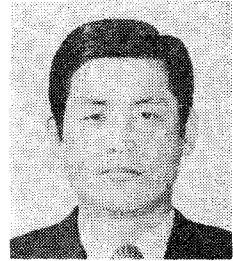
審査處理의 能率向上을 위하여 59년부터 10個年 計劃으로 Paperless 計劃을 推進하고 있으며 65年度에는 世界最初로 電子出願(Online, Floppy Disk) 接受를 開始하게 된다.

64年 5月에는 LAN 等の Intellizent 機能을 갖춘 新廳舍가 完成되어 Paperless System을 本格的으로 支援케 되는 基盤을 整備하게 된다.

(4) 서-치(Search) 外注計劃

特許情報의 檢索을 보다 容易하게 하기 위하여 詳細한 分類(F. Term)의 付與 및 그의 電子入力を 推進하고 이를 活用한 特許情報의 檢索에 民間의 能力을 積極的으로 活用한다. 即, 審査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業務(發明의 內容理解 및 對比判斷)가 相當部分 차지하고 있으므로 審査官의 增員等에 努力하는 한편 반드시 審査官이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先技術의 서-치

權 行政의 및 改革方案 (完)



鄭 完 燮

商工部 海外駐在官(前 特許廳 審判官) 日本長期信用銀行 派遣

特許·實用·審査官數와 審査要處理期間

國別	年度	58 (對前年度)	59	60	61	62	63.....70	處理期間
美 國		1361 (+186)	1418 (+57)	1477 (+59)	1415 (△62)	1493 (+78)	—————→ 每年 200人增員計劃	1年7個月 (62年末)
歐 州		860	889 (+29)	944 (+55)	1014 (+70)	1181 (+167)1775 (計劃)	2年6個月 (61年末)
日 本		873 (△12)	870 (△3)	865 (△5)	860 (△5)	856 (△4)	853 (△3)	3年1個月 (62年末)

業務에 대해서는 民間能力을 積極的으로 活用한다(64年度에 1萬件, Paperless 計劃이 完成되는 68年度에는 10萬件을 外注計劃임).

(5) 出願의 適正化

前述한 (2)~(4)項의 Out Put 增大策과 併行하여 In Put 對策으로서 出願等의 適正化施策을 拔本的으로 強化함으로써 出願人의 特許出願等에 대한 管理充實을 期하도록 한다.

(6) 法制의 改善

辨理士의 資質向上을 통한 審査處理促進을 위해 辨理士法 改正 等 辨理士制度의 改善과 其他 中長期的인

審査處理促進을 위한 制度改善의 檢討 및 이에 대한 基礎的 調查研究의 充實을 期한다.

(7) 國際化의 推進

歐·美·日 特許廳會合, Club 15(EC 13個國·美·日), WIPO, GATT TRIP 等 國際會議에 積極 參與하여 制度 및 運用의 國際 Harmonization을 期하면서 美·日 貿易委員會 知的所有權 WG를 通하여 美·日 特許摩擦에 效率的으로 對應해 갈 것이다. 그리고, WIPO의 Japan Fund 擴充(63年度 3,000萬圓→64年度 4,600萬圓)으로 發展途上國에의 協力을 積極的으로 推進하고 商標의 國際商品分類導入으로 國際的인 適正한 權利保護를 위해 니스 協定에 加入한다.

(案) 月刊「發明特許」稿募集 (內)

本誌는 讀者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工業所有權 專門誌입니다. 本誌는 製作에 讀者여러분의 幅넓은 參與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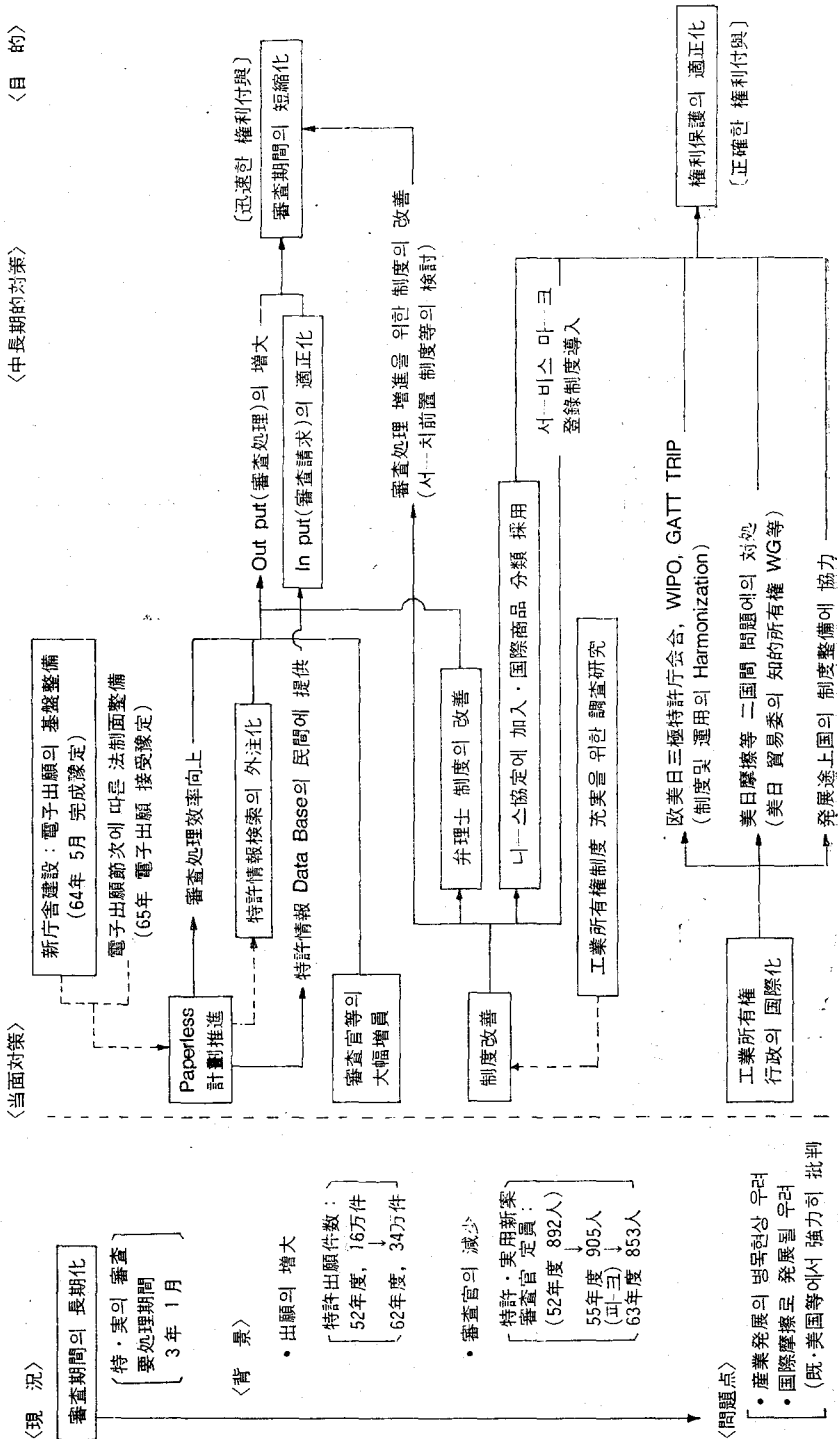
工業所有權에 관한 內容이면 무엇이든 歡迎합니다. 많은 投稿 바랍니다.

◎ 接受期限: 수시접수

◎ 接受處: 韓國發明特許協會 調查部 「月刊 發明特許」編輯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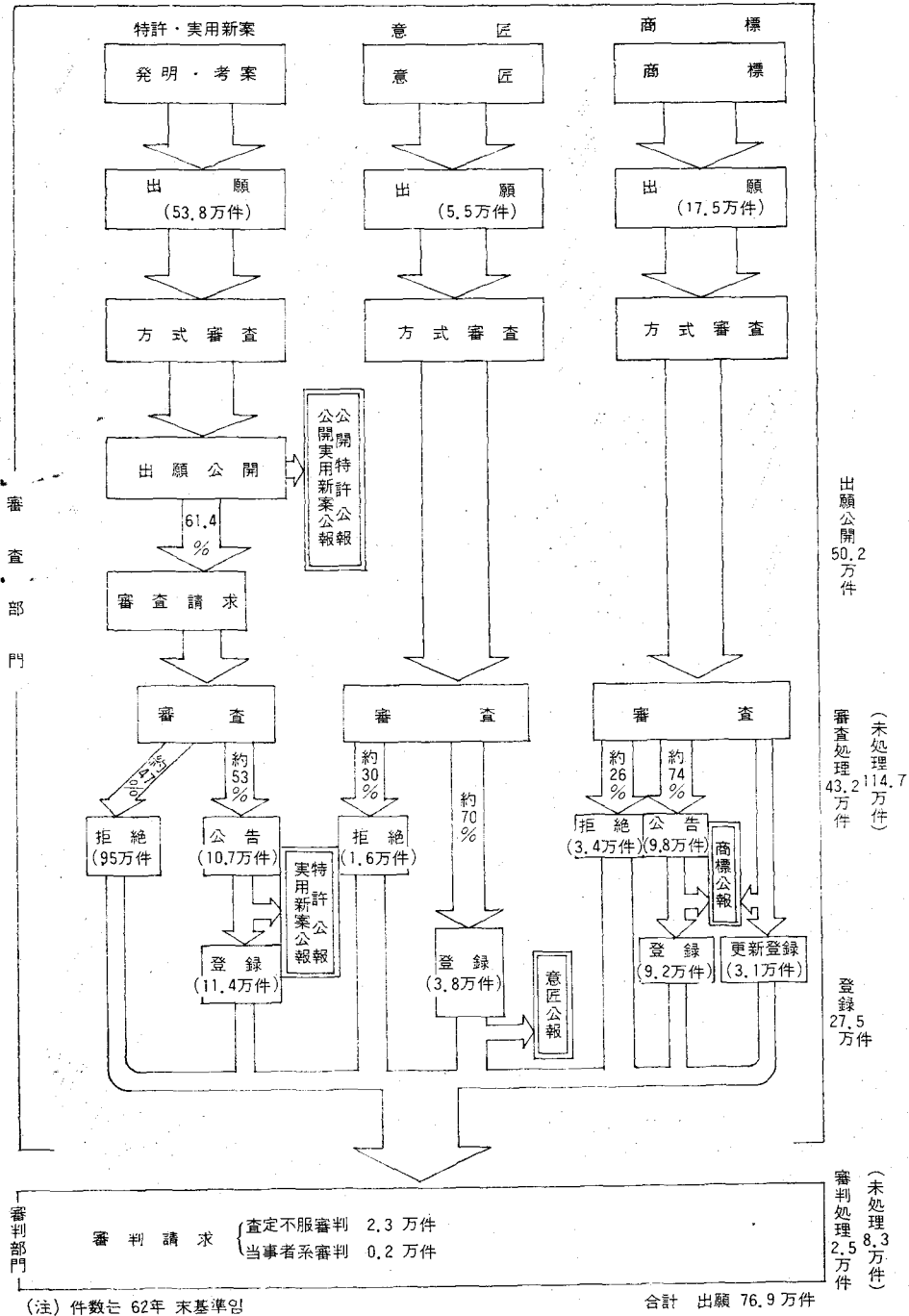
〈그림 5〉日本特許行政의 現況과 對策(綜合)

- 特許制度의 目的: 知的生産活動成果物의 公開에 따른 生産發展과 그 代價로서의 独占權付與
 → 特許制度 = 人類共通의 産業基盤
- 特許行政의 使命: 知的生産活動의 成果物에 대한 迅速, 正確한 權利付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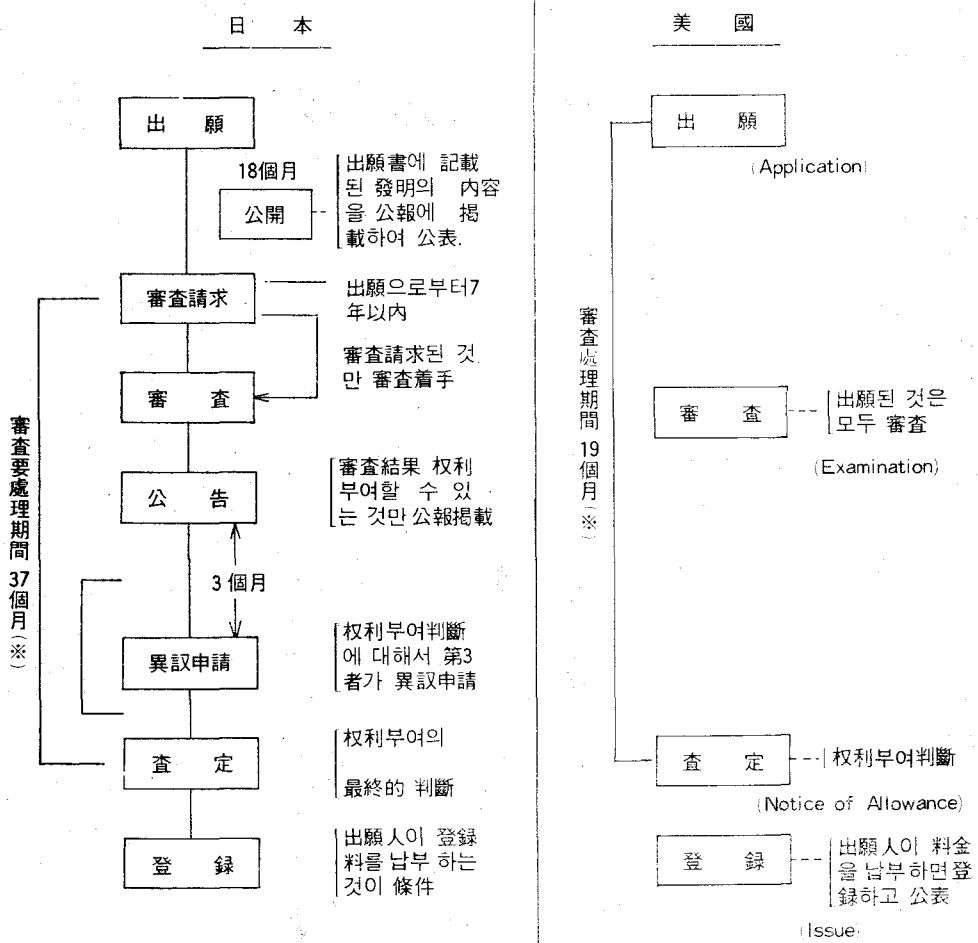


III. 參 考

1. 日本 工業所有權 實務節次の 흐름圖



2. 特許出願에서 登錄까지의 節次(美·日 比較)



※ 審査要處理期間=滯貨件數/年間處理件數
日本은 62年末, 美國은 61年末 実績임.

3. 美國上院의 日本特許制度 改善을 要求하는 付帶決議 16項目(1988. 7. 27)

1. 通産省은 特許廳을 指揮한다.
2. Trade Secret의 保護가 不適切하다.
3. 翻譯差誤에 對한 補正(修正)이 制限되고 있다.
4. 異議申請制度는 特許取得을 遲延시킨다.
5. 大量出願이 基本特許의 實施에 지장을 준다.
6. 特許廳은 極端의 으로 Step(審査官)이 不足하다.
7. 特許取得에 5~7年이 걸린다.
8. 日本語 以外의 出願은 不受理한다.
9. Grace Period(學會等에서의 發表後 一定期間內

의 出願을 認定하는 것=新規性擬制)가 6個月로서 너무 짧다.

10. 審査官은 簡單하고 單純한 クレ임을 選好한다.
11. 明細書記載에 對한 審査官의 Comment가 不明함.
12. 出願後 18個月에 公開되므로 模倣되기 쉽다.
13. 異議申請制度는 出願人에 있어 應答期間이 짧아서 不利하다.
14. クレ임 解釋幅이 너무 狹少함.
15. 製法特許에서 權利侵害의 立證이 困難하다.
16. 詐欺行爲의 規定이 遵守되지 않고 있다.

4. 64(1989)年度 日本 特許 特別會計豫算(案)

(單位：百萬円)

項 目	63豫算額	64要求額	主 內 容
〈重點項目〉			
○特許事務機械化 (Paperless 計劃等)	9,671	11,552	(1) Paperless System의 開發 ① 電子出願事務處理關聯 674→1,139 ② 檢索 System 開發 2,565→3,635 ③ 綜合資料 Data Base 蓄積 1,462→1,276 (2) 從來事務處理機械化 4,970→5,502
○新廳舍建設移轉維持 管理	17,989	12,262	(1) 建 設(完成) 17,659→9,500 (2) 移 轉 0→1,256 (3) 維持管理 330→1,506 增員 46名(審査官 30名)
○審査官等의 增員	0	120	
○特許情報檢索外注	23	472	
○工所權行政國際化	194	215	(1) 外國旅費 18→27 (2) 發展途上國協力(Japan Fund) 30→46
○工業所有權制度의 充實을 위한 調査研究	41	79	(1) 씨-미스 마-크 調査 10→17 (2) 工所權行政基礎調査 26→27 (3) 法制度問題研究 0→30
〈通常項目〉			
○人件費等	17,530	17,784	
○事業費(上記以外)	13,604	12,213	
・出願適正化指導事業	132	166	(中小企業等에 대한 電子出願指導 0→34)
・審査審判等	852	913	
・特許情報提供等	1,023	1,028	
・特許公報類發行	9,109	9,026	
・其他 事業費	2,488	1,080	
○其 他	869	1,101	
計	59,921	55,798	

● 最近 改善되고 있는 日本의 工業所有權制度 ●

日本特許廳의 니-스協定加入 및 國際分類採用

目 次

1. 現 況
2. 基本方針
 - 가. 니-스協定에의 加入
 - 나. 國際分類 採用
 - 다. 出願公告 公報上에
國際分類番號 併記

3. 必要性 및 理由
 - 가. 니-스協定加入 및 國際分類採
用의 必要性
 - 나. 國際分類를 副次的體系로 採用
하는 理由
 - 다. 協定加入에 앞서 出願公告公報
上에 國際分類番號를 併記하는
理由

〈이번號에 全載〉